

2024년도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3. 13. 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강태욱(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1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 1406건(안건번호 제2024-11647호~1305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11647호~11648호(순번 1번~2번)은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 중단의 시정 권고를 가결함.
 - 안건번호 제2024-11649호~11672호(순번 2번~26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 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 권고를 가결함.
 - 안건번호 제2024-11673호~11676호(순번 27번~30번)는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 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4-11677호~13052호(순번 31번~1406번)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강태욱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1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강태욱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을 전부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태욱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4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4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불

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를 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2개 게시물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 블로그에 ‘♣♣♣, ♣♣ ♣♣♣ ♣♣·♣♣’, ‘♠♠♠ ♠♠ ♠♠’ 등의 제목으로 뮤지컬 밀캠, (즉 현장공연을 몰래 녹화하는 행위), DVD, 온라인 생중계 영상 등을 교환 또는 판매하고 있음. 2024년 3월 7일 기준 다수의 비밀댓글이 게재된 점을 볼 때 심의대상 게시물 게시자는 비밀댓글을 통하여 영상 파일의 거래 조건을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채증 자료를 보시게 되면 블로그에 제목과 공연일자, 출연자 등을 게재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댓글 및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자 함. 현장 공연의 녹음 또는 녹화 파일 그리고 관리자에 의해 이미 영상물 또는 음반으로 고정된 DVD, OST를 복제한 파일 모두 보호원의 시정권고 대상인 불법복제물로 판단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반 블로그 게시물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쇼핑물의 제품 판매 게시물과 동일하게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는 것임. 게시물의 내용 및 비밀댓글에 비추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가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비추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임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 등으로 볼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

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동조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심의대상 게시물은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 대상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번~2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 '◆◆◆◆', '◇◇◇◇' 과 ♥♥♥ 카페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28개 게시물임.
(순번 1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

서)채증 자료를 보시게 되면 PDF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함.

- A 위원: 대학교에서 선후배간 족보, 교재 등은 어떻게 교환하는가.
- B 위원: 요즘은 대학교 커뮤니티 'ㄱㄴㄷㄹㅁ'에서 대부분 교환을 함.
- A 위원: 학생들 간 교재를 판매 또는 교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 B 위원: 저작권법의 사적 복제는 가정과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사적복제에 해당되지 않음. 심의 대상 게시물처럼 공개적으로 판매 또는 교환을 하게 되면 주의를 줄 수 있지만, 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한 교환의 경우에는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가 어려움.
- 박현주 전문위원: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

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 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을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 등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경우에는 게시자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7번~30번은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한 건으로, '○○○○○○○' 에 일본만화 '●●●', '▣▣▣▣▣▣ ▣▣▣▣ ▣▣▣▣▣▣▣▣' 등을 번역하여 1화씩 게시한 사안임.

(순번 2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채증 자료를 보시게 되면 게시글에 직접 만화책 한 페이지씩 한 편 전부를 게시함.

(순번 28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1화 분량을 직접 게시하고, 동일 저작물의 다른 화가 게시된 해외사이트 게시판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순번 29~3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1화 분량을 직접 게시하고, 심의 대상 사이트인 '○○○○○○○'의 다른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 박현주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동조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는 게시물마다 조회 수를 알 수 있는가.
- 박현주 전문위원: 게시물마다 조회 수는 확인이 가능하나, '○○○○○○○○'의 접속 수는 확인이 불가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순번 28번처럼, 동일 저작물의 다른 화가 게시된 해외사이트 게시판에 연결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 박현주 전문위원: 이 게시물의 저작물은 정식으로 수입된 만화는 아니지만 이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 시장가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 심의 안전으로 상정하였음. 따라서 해당 만화의 다른 회차로 연결하는 링크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음.
- 강태욱 분과위원장: 웹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불법복제물의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 대상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7번~3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31번~234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1376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윙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87번은 영화 '윙카'는 2024. 1. 31. 극장 개봉되어 현재 상영 중이며,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여 감상이 가능한 상태임.
(영화 '아가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19번은 영화 '아가일'는 2024. 2. 7. 극장 개봉되어 현재 상영 중이며,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여 감상이 가능한 상태임.
(만화 '사랑하라, 거짓된 천사들이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260번은 만화 '사랑하라, 거짓된 천사들이여'는 2024.02.28. 발행된 만화책으로 웹하드에서 1편 전페이지를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31번~2345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동조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1번~1406번은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4-11647호~13052호(순번 1번~140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2쪽부터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4-1964호~2103호(순번 1번~140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강태욱 분과위원장이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3. 20.

분과위원장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김춘식

위원 정경오